

○ 의안제출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991. 8. 13 영등포구청장 제출)

- 제안 이유
 - 일선행정 보조에 노고가 많은 통장들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
 - 전국적인 통일성 확보

- 주요 골자
 - “장학생의 정원은 구당 통장의 10% 범위 내로”를 “장학생의 정원은 구당 통장의 15% 범위내로”로 개정
- 개정조례안 (10면에 실음)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1. 8. 13 영등포구청장 제출)

- 개정 이유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구성에 따라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의회 전문위원 임용을 위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전문위원(지방별정직 5급상당)임용을 위한 자격기준을 설정함
- 개정조례안 (10면에 실음)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991. 8. 13 영등포구청장 제출)

- 개정 이유
 - 보건소장에게 위임된 적출물등 처리 지도 감독과 구청장에게 위임된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 및 지정취소 지도감독 업무등 이원화된 업무를 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일원화를

시키고자함.

- 주요 골자
 -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 및 지정취소 지도감독 업무를 구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재위임
- 개정조례안 (11면에 실음)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와미국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시의회제10지역과자매결연(안)

(1991. 8. 16 정종태의원의 6인 발의)

- 찬성의원 : 배기한, 윤태봉, 이중식, 서홍선, 김명환, 유일현

- 제안 이유
 - 영등포구의회와 로스앤젤레스시의회 제10지역간 우호증진과 상호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맺고자 함.

- 주요 골자
 - 우호증진과 사회발전 도모
 - 도시개발에 관한 상호정보 교환
 - 양지역주민 상호간의 방문시 편의제공
 - 문화교류 확대 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
- 의안내용 (12면에 실음)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991. 8. 19 임병섭의원의 10인 발의)

- 찬성의원 : 이중식, 이영규, 홍상기, 최수영, 임창수, 최규락, 김형기, 김진국, 심정기, 한기태

- 수정이유
 - 전문위원은 전문행정직 경력이 있는자가 필요하므로 행정경력이 10년이상으로 하면 기술 및 비서직도 가능 하므로 전문행정 경력이 있는자로 전문위원의 자격을 수정하고자함.

- 주요골자 (수정내용)
서울특별시 6급이상 공무원으로 행정경력이 10년이상인자를 서울특별시 6급이상 공무원으로 일반행정경력이 10년이상인자로 한다.

- 수정안 (13면에 실음)

○ 청원제출

1. 소방도로개설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
(1991. 8. 13.서울영등포구도립동 238번지 2호 김만철외 2인 으로부터 고광택의원의 소개로 제출)

요 지

도립2동 226-156간 소방도로개설 계획은 기존소로를 따라 설계되었기 때문에 굴곡이 심하여 도로의 기능을 다 할수 없으며, 공사구간 보상관계에도 16가구의 서민들의 주택이 부분철거되어 보상협약에도 많은 난점이 예상되며,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직선으로 설계를 수정하면 3개의 주택및 1개의 공장건물이 부분철거되어 공사구간내 보상협약에 있어 서민주택이 많은것 보다는 용이할 것으로 사료되며, 8미터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대로에서 진입하는 부분을 6미터로 하여 병목현상의 도로를 개설하면 도로의 효용가치 없어 본청원을 제출케됨

<별 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장학생의정원)중 "10%범위내"를 "15% 범위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 표 1>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중 6. 행정관리분야 다음에 7. 구의회관련분야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7. 구의회 관련분야

직명(위)및 업무구분	직 급	직무내용	임 용 자 격	근 거
구 의 회 전 문 위 원	5급상당	의안심의 및 의사 진행보좌	1.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3년이상인자 2. 서울특별시 6급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10년이상인자 3. 기타 임용권자가 위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 경력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 표 위임사무중 “36. 기생충 예방을 위한 수거”란 다음에 “37.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 및 지정취소등 지도감독”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위 임 종 류	수 임 기 간
“37. 적출물처리업자 지정 및 지정취소등 지도 감독	· 의료법 제17조 · 적출물등 처리규칙 제3조 및 제9조	재 위임	보건소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